

1. 개정이유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나.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16조의3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다.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안 제2조의2 개정)

신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를 삭제하고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 사유 중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6.)

3) 행정규제 : 규제없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4제1항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조의6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8조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같은 조 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2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1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를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로 하며, 같은 서식 신청인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제1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제1항”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를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신청인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제2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제2항”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를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신청인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제2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제2항”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첨부서류란의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을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제1호 중 설비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설비종류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기타()
------	---

같은 서식의 제3호 중 시공자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3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3항”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제목란의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대상 현황(설비개수)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년도)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대상 현황(설비개수)

태양광	태양열	지열	기타	계

같은 서식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설비개수)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년도)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설비개수)

구 분	정상가동	가동중단		폐기처분	비 고
		고 장	기 타		
태양광					
태양열					
지 열					
기 타					
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에 관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제2조의4에 따라 제정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본다.

제4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자에 대한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에 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실시하는 하자보수의 대상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차목 중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을 “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차목 중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을 “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비고 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u>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u> <u>시행규칙</u>		<u>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u> <u>촉진법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u>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u> 」 ----- ----- ----- -----.		
제2조(<u>신 · 재생에너지 설비</u>) 「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 <u>신 · 재생에너지 설비</u> ”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u>재생에너지 설비</u>) 「 <u>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u> 」----- ----- ----- ----- ----- <u>재생에너지</u> -----.		
1. <u>수소에너지 설비</u>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삭 제>		
2. <u>연료전지 설비</u>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삭 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 8. (생략)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 11. (생략)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 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삭 제>

4. ~ 8. (현행과 같음)

9.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10. · 11. (현행과 같음)

12. ----- 재생에너지-----

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② (생 략)

제2조의6(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6(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1. 2. (생략)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 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재생에너지 -----

-----.

1. 2. (현행과 같음)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

----- 재생에너지 -----

-----.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

재생에너지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재생

에너지

.

재생에너지

.

[illegible]

– 16 –

· 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

----- 재생에너지 -----

-----.

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

----- 재생에너지센터 -----
-----.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

-----재 생에 너 지-----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
-----재 생에 너 지-----

-----재 생에 너 지-----

-----.

1. (현행과 같음)

2. -----

다.

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

가. ---재생에너지-----

나. ---- 재생에너지 ----

-----재생
에너지-----

다. -----

--- 재생에너지 ----

3. --- 재생에너지 ----

② ----- 재생
에너지 -----

1. (현행과 같음)
2. -----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
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
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
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
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
지 제10호서식의 신·재생에너
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재생에너지 -----

--

3. (현행과 같음)

③ -----
----- 재생에너지 -----

-----.

제16조(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
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
지 -----

-----.

1.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 -----

운영계획서

제16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생략)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생략)

제16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 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

제16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생에너지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

----- 재생에너지 -----

-----.

1. 재생에너지 -----

2. 재생에너지 -----

3. ----- 재생에너지 -----

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② -----
----- 재 생 에 너 지 -----

-----.

③ -----
----- 재 생 에 너 지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3조의2에 따른 공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삭 제>

③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u> <u>월 1일</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